



제 1095 호

2013년 3월 8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조 례

○ 조례 제2013-113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葬)에 관한 조례	3
○ 조례 제2013-113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8
○ 조례 제2013-113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6
○ 조례 제2013-113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18
○ 조례 제2013-113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21
○ 조례 제2013-113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 개정개정조례	23
○ 조례 제2013-113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 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2
○ 조례 제2013-113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분노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35
○ 조례 제2013-113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39
○ 조례 제2013-114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4
○ 조례 제2013-114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0
○ 조례 제2013-114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 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5

공 고

○ 공고 제2013- 397호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57
○ 공고 제2013- 41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9
○ 공고 제2013- 442호	공인 신조·폐기 공고	71

회 람								
----------------	--	--	--	--	--	--	--	--

공 고

○ 공고 제2013- 443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 공고 [도시계획시설사업(중로1-325호선 도로개설공사)-3차]	72
○ 공고 제2013- 445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 공고 [도시계획시설사업(광로3-7호선 도로개설공사)-3차]	75
○ 공고 제2013- 441호	건설업 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77
○ 공고 제2013- 424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허가취소) 공 시송달 공고	78
○ 공고 제2013- 41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9
○ 지식정보센터 공고 제2013- 1호	2013년도 소래역사관 유물확충 사업 공고	83
○ 지식정보센터 공고 제2013- 2호	소래역사관 유물기증 안내	87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3년 3월 8일

남동구 조례 제113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수행 중 사망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남동구청장(葬)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상 사망공무원”이란 「공무원연금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공무원수행 중 재해로 사망한 공무원 및 공무직을 말한다.
2. “공무직”이란 「인천광역시 남동구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조에 따른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3. “남동구청장(南洞區廳葬)”이란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주관하는 장례절차를 말한다.
4. “가족장(家族葬)”이란 유가족이 주관하는 장례절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장의위원회) ① 남동구청장(南洞區廳葬)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청장 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한 사람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무원 노조 대표가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장례식의 일시·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 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무상 사망공무원이 소속된 부서장 또는 기관의 장이 된다.

제5조(집행위원회) ① 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 주무과장, 업무담당 부서장 또는 기관의 장, 구월1동장, 논현고잔동장 및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무원 노조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2명이 된다.

④ 집행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집행위원회는 장례절차에 따른 총무·의식·재무 등 집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6조(장례기간 및 절차 등) ① 남동구청장(南洞區廳葬)의 기간·절차 및 의식 등은 「건전가정의례준칙」 및 「정부의전편람」을 준용한다.

② 가족장(家族葬)의 경우, 구청장은 가족장(家族葬)이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장례비용) ① 남동구청장(南洞區廳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 소요금액의 범위 안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② 가족장(家族葬)의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때에는 별표의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유가족은 장제비용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무원 노조위원의 경우,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설립 신고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를 가진 단체의 대표와 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별표]

장제비기준 (제7조 관련)

사항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영결식장 설치	면적 6m×3m=18㎡ 높이 4m	식	1	5.5평 원칙
영구차	대 형	대	1	1일간
관·수의 등 장례용품	중 급	식	1	3일장 원칙
헌화용 꽃 및 근조리본 등				
가. 헌화	일 반	개	500	조문객용
나. 근조리본	흑 색	개	300	유족·종사원·조문객용
다. 장갑	백 색	족	100	유족 및 종사원용
라. 넥타이	흑 색	개	20	유족용
마. 영구차 리본	대 형	개	1	
조화	대 형	개	1	구청장 명의
안내문 인쇄	모조 32절 180g/㎡	부	500	
납골함 (통)	-	개	1	일반용
기타비용	-	-	-	조문객 접대 등 기타 장례비

※ 화장비, 납골당(묘) 안치비용, 묘지설치비는 제외함.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 이유

- 공무수행 중 사망한 남동구 소속공무원 및 공무원직에 대한 구청장(葬)의 제정을 통하여 순직한 직원 및 유가족에 대한 예를 다하고 소속 직원의 사기를 증진시키어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정함.

□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제2조)
 - 남동구청장(南洞區廳葬), 가족장(家族葬)
-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제3조)
 - 구 소속 공무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중 공무상 사망공무원 및 근로자
- 장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9명 이내 (제4조)
 - 위원장 : 구청장 / 부위원장 : 부구청장
- 집행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12명 이내 (제5조)
 - 위원장 : 업무담당국장
- 장례비용에 관한 사항 (제7조)
 - 장제비 기준(별표)에 의한 소요금액 범위 내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3년 3월 8일

남동구 조례 제113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무관리규정」 제41조”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로 한다.

제2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인은 그 직무의 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 새기되, 구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 중 “신조·개각”을 각각 “등록·재등록”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의”를 “공인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개각”을 “재등록”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지방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록관(「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시는 해당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중 “관리관수자(이하”관수자“라한다)”를 “보관자”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및 본문(제1항부터 제3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중 “관수자”를 각각 “보관자”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관수”를 “보관”으로 한다.

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인 날인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 중 “「사무관리규정」 및 같은 영 시행규칙”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같은 영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 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공인명칭			
종 류		[]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등록(재등록, 폐기) 사유			
폐기 대상 공인 처리	폐기 예정일 (분 실 일)	년 월 일	
	폐기 방법	[] 이관 [] 기타()	
	폐기한 사람 (분실한 사람)	소속: 직급:	성명:
비고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 서식]

공 인 대 장

공인 명칭					
종류	[]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관리부서		
[] 등록 [] 재등록	(인 영)	등록일(재등록일)	년 월 일		
		새긴 날짜	년 월 일		
		새긴 사람	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		
		최초 사용일	년 월 일		
		재료			
		등록(재등록) 사유			
		구보 공고	년 월 일 공고 제 - 호		
		비고			
폐기	(인 영)	등록일(재등록일)	년 월 일		
		폐기일(분실일)	년 월 일		
		폐기 사유	[] 마멸 [] 분실 [] 기타()		
		폐기 방법	[] 이관 [] 기타()		
		폐기 또는 분실한 사람	소속: 직급: 성명:		
		구보 공고	년 월 일 공고 제 - 호		
		비고			

<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210mm×297mm(백상지 150g/㎡)

[별지 제3호 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

공인 명칭					
종류	☐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 등록 ☐ 재등록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등록일(재등록일)	년 월 일		
		등록(재등록) 사유			
		관리부서			
		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사용 기관(부서)	시스템 명칭	통보일	최초 사용일
		비 고			
	폐기	전자이미지공인 인영	폐 기 일	년 월 일	
폐기 사유					
폐기한 사람			소속:	직급:	성명:
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					
사용 기관(부서)			시스템 명칭	통보일	최종 사용일

<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210mm×297mm(백상지 150g/㎡)

[별지 제4호 서식]

인 영 부

공 인 명	인 영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등록 · 재등록	등록 · 재등록	등록 · 재등록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등록 · 재등록	등록 · 재등록	등록 · 재등록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등록 · 재등록	등록 · 재등록	등록 · 재등록

(가로인쇄)

(B4) 257mm×364mm 인쇄용지 120g/㎡

[별지 제5호 서식]

행 정 기 관 명

()

수 신

(경 유)

제 목 공인사고 보고

다음과 같이 공인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

1. 사 고 인 명	
2. 사고발생 일시 (장 소)	년 월 일 ()
3. 사 고 내 용	
4. 사 고 후 의 처 리 전 말	년 월 일
5. 기 타	

발 신 명 의 인

기안자(직위/직급) 서 명 검토자(직위/직급) 서 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 명

협조자(직위/직급) 서 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 소

/ 홈페이지 주소

전 화 () 전송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 mm × 297mm 백상지 80g/㎡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조례 근거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및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용어 정비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조례의 근거 법령 수정 (제1조 및 제16조)
- 공인을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 (제2조제4항)
- 공인의 글씨 재규정 (제4조제1항)
- 신조·개각을 등록·재등록으로 용어 순화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
- 관리자를 보관자로 용어순화(제12조부터 제15조)
- 공인날인 색깔 규정 신설 (제15조제3항)
- 별지서식 개정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5호 서식)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3년 3월 8일

남동구 조례 제113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제26조부터 제37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관련 주체가 시·도지사로 이양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미술장식심의위원회 관련 조항 전부 삭제 (안 제26조부터 제37조)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3년 3월 8일

남동구 조례 제1134호

인천광역시남동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지명위원회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지명지원회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명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부터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명위원회”로 하고, “규정함”을 “정함”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회”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구청장”을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구청장”을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3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조제4항 중 “시지명위원회의 위원을 구지명위원회의 위원”을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의 위원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심의 결의한다”를 “심의·의결한다.”로 한다.

제4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7조 중 “예산의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한다.

제8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지명위원회 근거법령인 「측량법」이 폐지 되고 새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 준용 근거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조례를 새로이 정비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명위원회 준용 근거 법령 변경 (제1조)
-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성별을 고려한 문구 추가 (제2조제3항)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및 띄어쓰기 등 용어 정비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3년 3월 8일

남동구 조례 제113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무인민원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의하여 발급하는 제증명 수수료의 신용카드 등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규정(대통령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의 표준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적합하도록 일부 수수료 항목 및 금액을 신설·조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수수료 납부제도 추가 개선 (제6조)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제증명 수수료도 신용카드 등 결제 가능
- 제증명 등 수수료 조정 및 신설 (별표1)
 - 수수료 조정 : 26개 항목(인상 1종, 인하 22종, 동일 3종)
 - 수수료 신설 : 41개 항목
-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수수료 별도 규정 (별표1)
 - 무인민원발급 수수료 20% 인하 (10종)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3년 3월 8일

남동구 조례 제1136호

인천광역시남동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정치활동 등 금지의무) ① 이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선거운동”이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말한다.

제2장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7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관할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관할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또는 민·관 혼합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위탁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0조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두며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운영 전반에 대하여 총괄한다.

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센터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장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 또는 민·관 혼합운영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센터 내 인사위원회를 거쳐 구청장이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센터의 운영주체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선임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2년간의 사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센터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임 센터장의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④ 인사위원회는 징계위원회를 겸하며 센터의 별도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제10조(센터장의 자격요건) 센터장의 자격 요건은 남동구에 3년 이상 거주 또는 소재지를 두고 활동을 한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 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제11조(센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공유재산 및 물품 등에 대하여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11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1월전 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 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감사 및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에 대하여 감사 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지도·감독은 연 1회 이상 하여야 하며 결과에 따라 관련자 징계 및 행정상·재정상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등록취소) 구청장은 제8조제6항에 따른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등록한 후 2년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및 사업추진 실적을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경우
2. 자원봉사활동으로 알게 된 공무상의 비밀 또는 자원봉사수요자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3.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에 따른 포상 등을 받은 경우

제3장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 민간위원으로 선출하여야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은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자원봉사단체 대표

2. 수요처 대표
 3. 유관기관 또는 사회단체(시설)대표
 4. 학생봉사활동 관련 교직원
 5. 자원봉사분야 전문가 및 자원봉사활동 유경험자
 6.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7.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센터장
- ④ 위원회 간사는 센터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6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결산 등에 관한 사항
3. 센터장의 임기 연장에 관한 사항
4.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등록 단체 및 회원의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8조(위원회 개최) ① 위원회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운영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구의원, 센터장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이를 해촉할 수 있다.

1. 당해 위원이 질병 등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사퇴를 희망할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반하였을 때
3.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직위 변경 등으로 그 대표성을 상실하였을 때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20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자원봉사활동 진흥

제21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구청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직장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육성을 위한 자원봉사 지도자를 둘 수 있다.

④ 학교·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제23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구청장은 구민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센터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24조(포상) 구청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및 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5조(경력 인정 등) 구청장 또는 직장·학교 등 법인·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26조(자원봉사 인증서 발급) 센터장은 제8조제6항에 따른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 중 일정 기간 이상의 자원 봉사활동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7조(보험가입) ① 센터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센터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가입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게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센터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 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8조(실비 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하여 행하여진 각종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현재 시행중에 있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조례에 미반영 된 사항들을 추가하고
-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 중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보완하여 자원봉사 센터 운영의 효율성 및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내용에 따라 4개의 장으로 분류 → 장 신설
(제1장 총칙, 제2장 자원봉사센터, 제3장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제4장 자원봉사 활동 진흥)
-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 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분야 등을 추가하는 등 그 범위를 확대함 (제3조)
- 정치활동 등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신설 (제5조)
-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방법에 있어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와 민간위탁 할 경우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세부사항을 추가함(제8조)
- 센터의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임기, 자격요건을 정함 → 신설 (제9조~제10조)
- 자원봉사센터 운영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신설(제15조~제20조)
- 자원봉사 활동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학교·직장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경력인정 및 자원봉사 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신설 (제 21조, 제22조, 제25조, 제26조)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3년 3월 8일

남동구 조례 제113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말한다. 다만”을 “말하며”로 하고,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을 제조·판매하는 과자점의 형태의 영업은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를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을 말한다.(다만, 휴게음식점 중 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을 제조·판매하는 과자점의 형태의 영업점과 일반음식점 중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 전문점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스스로 재활용

나. 음식물류 폐기물을 대상으로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광역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법 제29조에 따른 설치승인(신고를 포함한다)을 받은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운영자(지방자치단체의장이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12.7.3)에 따라 다량배출사업장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사업장의 최소면적을 125 제곱미터에서 200 제곱미터로 상향 규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을 상위법령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다량배출사업장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의 최소면적 규정 변경 (제2조)
 - 최소면적 : 당초 125제곱미터 이상에서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
-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처리대행자에 지정사항 명칭 변경 (제13조제2항)
-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규정 (제15조제2항)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3년 3월 8일

남동구 조례 제113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 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분뇨수집·운반업자”라 함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운반하는 영업을 허가 받은 자를 말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건물,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 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
4. “관할구역”이란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 지역을 말한다.

제3조(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으로 허가를 받은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청소추정량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수집·운반차량에 관한 사항(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필요한 장비 등 구비)
5. 차고지 및 사무실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분뇨수집·운반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대행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부과·징수)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다만, 구청장이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분뇨를 배출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를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한 자는 그 건축물의 내부청소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5조(처리실적 보고) 분뇨관련 영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실적 등을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과태료 부과·징수) 구청장은 법 제80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2013. 3. 8. 조례 제11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남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분뇨수집·운반 대행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

[별표]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구 분		용량	요금(원)	비 고
수거식 화장실(분뇨)		10 ℓ 당	200	수수료에는 1ℓ 당 1원 씩의 처리요금이 포함 되어 있음
개인하수처리시설	기본요금	750 ℓ 당	14,662	
	추가요금	100 ℓ 당	1,135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 이유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중 오수·분뇨에 관한 사항은 「하수도법」에 통합되고, 가축분뇨에 관한 사항은 분법 되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추어 「인천광역시 남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제3조)
 -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및 계약에 포함될 사항
- 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제4조)
- 처리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 (제5조)
-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제6조)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3년 3월 8일

남동구 조례 제113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소·돼지·말·닭·젓소·오리·양·사슴·개를 말한다.
2.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지역)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 지역에 대하여 가축사육을 전부 제한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 수정의 목적으로 계류 중인 가축
 3.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축산물 상설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영업을 목적으로 계류 중인 가축
 4.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정에서 사육하는 애완용 가축 및 조류
 5. 농경용 또는 농가의 부업용으로 사육하는 성축 1마리와 자축 3마리 이하의 가축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중 녹지 지역에서 설치 허가를 받은 배출시설 및 신고대상 규모 미만의 배출시설
- ② 제한지역에서의 가축사육은 기존 가축 사육자에 한정하며, 가축 사육자는 축사를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의 환경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생활환경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가축사육의 금지
 2. 가축사육에 따른 오물의 처리
 3. 가축사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철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의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이전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한다.

제4조(가축분뇨수집의 처리비용 부담)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법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운반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서 처리비용을 별표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다만, 구청장이 수집·운반업자에게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가축분뇨 수집·운반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기간 및 청소 추정량
2.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수집·운반차량의 용량별, 형식별 대수(흡입식 차량 확보, 탈취시설 등 필요한 장비 등 구비)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실적 등의 매월 내역과 법령에 정한 규정에 맞게 청소하였는지를 반기 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과태료 부과·징수) 구청장은 법 제53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가축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제4조제2항 관련)

구 분	용 량	수수료	비 고
기 본	750ℓ당	14,662원	
추 가	100ℓ당	1,135원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 이유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중 오수·분뇨에 관한 사항은 「하수도법」에 통합되고, 가축분뇨에 관한 사항은 분법되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 제정된 상위법령에 맞추어 「인천광역시 남동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축 및 가축분뇨의 정의에 관한 사항 (제2조)
-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제3조)
-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제7조)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3년 3월 8일

남동구 조례 제114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서 규정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적재조사 측량 시 현지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3. 지적재조사 측량 시 발생하는 경계분쟁에 관한 조정권고
4. 그 밖에 지적재조사 측량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적소관청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 가. 지적소관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각 사업지구의 동장. 단, 동장의 경우 재적위원의 수를 1명으로 하되, 회의에 참석할 대상은 해당 사업지구가 속한 동장으로 하며 2개 이상의 행정동의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 및 기피) ①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안건에 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의 분쟁 또는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자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④ 제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지적담당이 된다.

-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 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요약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으로부터 회부 받은 지적확정조서에 대한 결정은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 회의 결정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최대 60일을 초과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아니하거나 못하는 경우는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보며 지적소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결도 이와 같다.

④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⑤ 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이 조정이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만을 별도로 표기하여야 하며, 위원회 회의 개최 없이 서면 심사하는 경우에는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따로 의결한다.

⑥ 제3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문서로써 지적소관청에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이를 취합·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위원회의 경계결정의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르되, 위원회는 경계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의 소속 공무원은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지) 지적소관청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계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 또는 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경계분쟁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한 지적재조사 측량성과의 연결교차 이내인 경우
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이의신청을 중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조정 등을 이유로 경계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제12조(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회의록 작성)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에 중요사항

② 간사는 회의록 작성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 이유

- 법률 제11062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09.16 제정되어 2012.03.17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11항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제1조)
- 경계결정위원회 기능 및 구성 (제2조 및 제3조)
-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임기 및 위원의 해촉 (제4조 및 제5조)
-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제척 및 기피 (제6조)
-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
- 경계결정위원회 간사 (제8조)
- 경계결정위원회 회의 (제9조)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제10조)
- 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지 (제11조)
- 경계결정위원회 회의 수당 지급 (제12조)
- 경계결정위원회 회의록 작성 (제13조)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3년 3월 8일

남동구 조례 제114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대상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② 그 밖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속 동장. 단, 동장의 경우 재적위원의 수를 1명으로 하되, 회의에 참석할 대상은 해당 사업지구가 속한 동장으로 하며 2개 이상의 행정동의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한다.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제3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의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안건에 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의 분쟁 또는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자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 측량 및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지적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 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라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검토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검토 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록 작성)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에 중요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 이유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09.16 제정되어 2012.03.17 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8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제1조)
- 지적재조사위원회 기능 및 구성 (제2조 및 제3조)
-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임기 및 위원의 해촉 (제4조 및 제5조)
-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제6조)
-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
- 지적재조사위원회 간사 (제8조)
- 지적재조사위원회 회의 (제9조)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제10조)
- 지적재조사위원회 회의 수당 지급 (제11조)
- 지적재조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제12조)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3년 3월 8일

남동구 조례 제114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세출)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② 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4조(이월사용)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경리관 : 담당국장
2. 분임 징수관, 분임 경리관 : 담당과장
3. 지출원, 수입금 출납원 : 업무담당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 이유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 발전소 주변지역에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 지원사업 등을 추진코자
- 상위법령에 맞추어 「인천광역시 남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원사업의 정의 (제2조)
-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구성 (제3조)
- 지원금의 이월사용 (제4조)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3-397호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2013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을 아래의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3월 8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열 랐**

- 기 간 : 2013년 3월 4일 ~ 3월 25일
- 장 소 : 주택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 열람내용 :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13년 3월 4일 ~ 3월 25일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주택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 제출방법 :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201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2013년 공동주택가격(안)」을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군·구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동주택가격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랐

- 기 간 : 2012년 3월 4일 ~ 3월 25일
- 장 소 :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ltm.go.kr)
※ 방문 열람은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 내 용 : 2013년 공동주택가격(안)

□ 의견제출

- 기 간 : 2013년 3월 4일 ~ 3월 25일
- 제출사항 : 매도호가나 특수한 사정에 의해 형성된 가격 등이 배제된 적정가격에 비추어 공동주택가격(안)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 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공동주택 등과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에 적정한 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
- 제 출 자 :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인터넷 :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ltm.go.kr)
 - 직접 제출·우편·팩스 : 공동주택 소재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국토해양부(한국감정원 지점)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2012년 4월 24일 개별통지(서면 제출의견) 또는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제출의견)를 통하여 회신

※ 의견제출인은 2013년 4월 24일 ~ 4월 30일까지 그 처리결과를 열람 가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13-41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3월 8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과 계약부문 준용,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을 규정하여 보조금 관리에 투명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보조금 관리 및 집행 신설 (안 제9조의2)
 -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 계약체결 등 신설 (안 제9조의3)
 - 계약부문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준용
-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사업비 정산검사의 구체화 (안 제11조부터 제12조)
- 보조사업의 사후평가 (안 제12조의2)
-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에 대한 관리·감독 명문화 (안 제13조의2)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른 조례 정비

4.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42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 민간위탁금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기획예산실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064, FAX 453-2059)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6. 개정조례(안)

-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별첨
-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 별첨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3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과 계약부문 준용,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보조사업 사후평가 등을 규정하여 보조금 관리에 있어 투명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보조금 관리 및 집행 신설 (안 제9조의2)
 -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 계약체결 등 신설 (안 제9조의3)
 - 계약부문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준용
-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의 구체화 (안 제11조부터 제12조)
- 보조사업의 사후평가 (안 제12조의2)
-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에 대한 관리 감독 명문화 (안 제13조의2)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른 조례 정비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참고자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42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 민간위탁금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는 “제29조제5항에 따라”로, “규정 함”을 “정함”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 “보조금”이라 함은 구 ”를 “ “보조금”이란 인천광역시 남 동구(이하 “구”라 한다) ”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 “보조사업”이라 함은 ”을 “ “보조사업”이란 ”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 “보조사업자”라 함은 ”을 “ “보조사업자”란 ”으로 한다.

제3조 중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을 “보조금의 관리는”으로, “의한다” 는 “따른다”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국고보조재원에 의한”을 “국·시비 보조재원에 따른”으 로, “국가”를 “국가나 인천광역시”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보조신청)”을 “(보조금 신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한다.

제5조제2항제8호 중 “수입될 수입금”을 “발생될 수입금”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9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지령서를 보조금 교부 신청자에게 교부한다”를 “제7조의 교부조건을 포함한 교부결정 내용을 보조금 교부 신청자에게 통지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보조지령”을 “교부결정 내용을 통지하기”로 한다.

제9조 중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을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월별 또는 분기별”로 하며, “사업년도”는 “사업연도”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 ①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
2.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③ 보조사업 지원부서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계약체결 등)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는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사정변경에 의한 보조 결정의 변경·취소)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또는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 중 “감소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를 “감소비율에 따라 감액하고,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는 구청장에게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보조사업의 사후평가) ① 구청장은 매년 제4조에 따라 추진하는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에는 해당 사업의 성과, 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하여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4조 본문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4조제2호 중 “성공”을 “목적달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조례에 의한”을 “조례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5호 및 제6호) 중 “허위”는 각각 “거짓”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 구보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 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구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생략) 1. “보조금”이라 함은 구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이하“법령”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보조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생략)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생략) 제5조(보조신청) ① (생략)	제1조(목적)-----제29조제5항에 따라-----정함----- 제2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 1. “보조금”이란 인천광역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2. “보조사업”이란----- 3. “보조사업자”란-----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 는-----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1. (현행과 같음) 2. 국·시비 보조재원에 따른-----국가나 인천광역시----- 3. (현행과 같음) 제5조(보조금 신청) ①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u>기타</u>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6. <u>그 밖에</u> -----
② <u>전항의</u>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u>제1항의</u>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u>수입될 수입금</u> 에 관한 사항	8. ----- <u>발생될 수입금</u> ---
9. <u>기타</u>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9. <u>그 밖에</u> -----
제8조(보조금 등의 교부결정통지)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u>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지령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교부한다.</u>	제8조(보조금 등의 교부결정통지) ① --- ----- <u>제7조의 교부조건을 포함한 교부결정 내용을 보조금 교부 신청자에게 통지한다.</u>
② 보조금의 <u>보조지령</u>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u>의하여</u>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 <u>교부결정 내용을 통지하기</u> ----- ----- ----- <u>따라</u> ----- -----
제9조(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u>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u> 교부한다. 다만,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전 또는 <u>사업년도</u>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9조(교부방법) ----- -----, <u>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월별 또는 분기별로</u> ----- ----- <u>사업연도</u> -----
<u><신 설></u>	제9조의2(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 ①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0조(사정변경에 의한 보조 결정의 변경·취소) 구청장이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제11조(보조사업 실적보고) 공공단체가 보	2.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③ 보조사업 지원부서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의3(계약체결 등)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는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사정변경에 의한 보조 결정의 변경·취소)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11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보조사업자는

현 행	개 정 안
조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년도 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는 그 사업의 완성 후 또는 당해연도 내에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또는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정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비 정산검사) ① (생략) ② 사업비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	제12조(사업비 정산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감소 비율에 따라 감액하고, 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는 구청장에게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의2(보조사업의 사후평가) ① 구청장은 매년 제4조에 따라 추진하는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에는 해당 사업의 성과, 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 설>	제13조의2(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하여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4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제14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각 호의 어느 하나-----

현 행	개 정 안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1. (생략)	-----
2. 보조사업의 <u>성공</u> 가능성이 없을 때	1. (현행과 같음)
3 ~ 4. (생략)	2. ----- <u>목적달성</u> -----
5. <u>허위</u>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3 ~ 4. (현행과 같음)
6.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u>허위</u> 보고를 하였을 때	5. <u>거짓</u> -----

	6. -- <u>조례에 따른</u> -----
	----- <u>거짓</u> -----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관련)

1. 비용발생요인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작성자 : 기획예산실장 윤 인 석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3-442호

공인 신조·폐기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한 공인신조·폐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8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공인 신조·폐기 사유 : 인증기 공인 마모
- 공인의 최초사용일(공인 폐기일) : 2013. 3. 11
- 신조·폐기 공인명 및 인영 : 신조(1개), 폐기(1개)

구 분	공 인 명	인 영	서체 및 규격	비 고
신 조 공 인	간석2동장인 (간석2동민원전용)		한글전서체 2.1cm × 2.1cm	인증기
폐 기 공 인	간석2동장인 (간석2동민원전용)		한글전서체 2.1cm × 2.1cm	인증기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3-443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중로1-325호선 도로개설공사)-3차]

수용재결신청서 열람 공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중로1-325호선 도로개설공사)-3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의 퇴가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8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중로1-325호선 도로개설공사 -3차
3. 사업의 위치 : 인천 남동구 일원
4. 공고 및 열람기간 : 2013 3. 8 ~ 2013. 3. 25
5. 열람 및 의견제출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032-453-2992)
6. 수용재결신청물건 : 별첨 사업자제시액조서 참조
7. 기타사항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련서류는 남동구청 도시관리과에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께서는 열람공고 기간내에 남동구청 도시관리과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자제시액조서 (토지-소유자별)

연번	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평가액				사업시행자제시액		관계인				
	성명	주소			공부	현황		감정평가 기관A	감정평가 기관B	감정평가 기관C	평균	단가	금액	주소	성명	권리의종류		
1	배흥산	인천 서구 가정동 523-7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58-9	전	전	109.0	385,000	360,000	366,000	370,333	370,333	40,366,330					
						소계	109.0				소계	40,366,330						
2	이상익	경기도 시흥시 시흥대로 1031-4(미산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96-2	전	전	347.0	370,000	360,000	366,000	365,333	365,333	126,770,660					
				196-17	전	전	448.0	370,000	360,000	366,000	365,333	365,333	163,669,330					
						구	18.0	122,000	119,000	121,000	120,667	120,667	2,172,000					
						소계	813.0				소계	292,611,990						
						총계	922.0				총계	332,978,320						

사업시행자제시액조서(물건-소유자별)

연번	소유자		소재지	지번	물건명	구조 및 규격	수량	단위	평가액				사업시행자제시액		관계인		
	성명	주소(송달주소)							A	B	C	평균	단가	금액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1	이상익	경기도 시흥시 시흥대로 1031-4(미산동) (송달주소) 경기도 시흥시 시흥대로 1031-4(미산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96-17	파이프비 닐하우스	일부보온 덮개	140.89	㎡	6,340,050	6,621,830	6,340,050	6,433,977	45,666	6,433,970			
					포장기		2	대	1,700,000	1,700,000	1,600,000	1,666,667		1,666,660			
					양수기		3	대						일괄			
					기타자재 집기		1	식						일괄			
					주방		1	식						일괄			
					물통		1	식						일괄			
					수국나무		1	주	400,000	420,000	400,000	406,667		406,660			
					느티나무		2	주						일괄			
					절단기		3	대	300,000	320,000	300,000	306,667		306,660			
					관정		1	식	1,300,000	1,400,000	1,300,000	1,333,333		1,333,330			
												소계	10,147,280				
												총계	10,147,280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13-445호

[도시계획시설사업 (광로3-7호선 도로개설공사)-3차]
수용재결신청서 열람 공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도시계획시설사업(광로3-7호선도로개설공사)-3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의뢰가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8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광로 3-7호선 도로개설공사 -3차
3. 사업의 위치 : 인천 남동구 일원
4. 공고 및 열람기간 : 2013 3. 8 ~ 2013. 3. 25
5. 열람 및 의견제출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032-453-2992)
6. 수용재결신청물건 : 별첨 사업자제시액조서 참조
7. 기타사항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련서류는 남동구청 도시관리과에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께서는 열람공고 기간내에 남동구청 도시관리과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자제시액조서 (토지-소유자별)

연번	소유자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평가액				사업시행자제시액		관계인		
	성명	주소			공부	현황			감정평가 기관A	감정평가 기관B	감정평가 기관C	평균	단가	금액	주소	성명
1	최여엽	인천연수구 청학동178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57-2	도	도	3.0	131,000	125,000	127,000	127,667	127,667	383,000			
				57-5	도	도	57.0	131,000	125,000	127,000	127,667	127,667	7,277,000			
				57-10	도	도	51.0	131,000	125,000	127,000	127,667	127,667	6,511,000			
						소계	111.0				소계	14,171,000				
						총계	111.0				총계	14,171,000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3-441호

건설업 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3호 및 건설업관리규정 제7장 제2호 나목(3)항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 하고 사업장, 대표자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8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처분의 내용 : 건설업 등록말소
2. 처분의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3호 건설업관리규정 제7장 제2호 나목(3)항(등록기준에 미달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처분종료일까지 등록기준의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때)
3. 위반내용(상세) : 건설업등록기준인 보증가능금액 실효에 해당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처분종료일 까지 등록기준의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 한 때
4. 대상업체

상호 및 대표자	소재지	업종 및 등록번호	보증가능금액실효일	처분내용
유미조경 임원근 (630714-1*****)	인천 남동구 문화로133 번길 8-5 (구월동)	조경식재공사업 (사천2003-18-1)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사천2003-19-1)	실효일:2011.12.02 영업정지기간: 2012.09.27~2013.1.26	등록말소

▶ 등록말소 처분일자 : 2013.03.08(금)

5.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우리구에 반납하시기 바라며, 등록말소일 이후에 영업을 계속할 경우에는 동법 제96조(벌칙)에 의거 처벌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대리인의 선임)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의 규정에 의거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7. 위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을 동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http://kiscon.net/>), 남동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13-424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허가취소) 공시송달 공고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영업시설물 전부 멸실한 아래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하고자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기일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폐문 부재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사항을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3년 3월 8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영업소 폐쇄(신고철회)]
2. 공고기간 : 2013.03.05. ~ 2013.03.20.(15일간)
3. 당 사 자

업종	교부번호	업소명	대표자	업소 소재지	위반사항	행정처분명
식육포장 처리업	3530000-004 -2004-0001	대성축산	황명환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34번지 2호	영업시설물 전부 멸실	허가취소

4. 처분내용 : 허가취소
5. 행정처분일 : 2013.02.15.
6. 사 유 : 영업시설물 전부 멸실
7. 법적근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적용
8. 청 문 일 : 2013.2.14.(목) 14:00
9. 유의사항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남동구청장) 또는 재결청(인천광역시장)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 제기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0.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남동구 농수산개발과 농축산팀(☎ 032-453-2707)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3-41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3월 8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개정이유

- 성실납세자 중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표창장”에서 “표창”을 수여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이후 탈세, 체납 등의 사유 발생 시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을 취소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 5조 제2호 중 “표창장”을 “표창”으로 변경
- 제6조의 단서를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3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세무과장,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소래길 633 남동구청 세무과 전화 : 032-453-2363, FAX : 032-453-23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및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3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성실납세자 중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표창장”에서 “표창”을 수여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이후 탈세, 체납 등의 사유 발생시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을 취소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 5조 제2호 중 “표창장”을 “표창”으로 변경
- 제6조의 단서를 신설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인천광역시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호 중 “표창장”을 “표창”으로 한다

제6조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가 탈세, 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즉시 그 지정을 취소하고 교부된 성실납세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지식정보센터 공고 제2013-1호

2013년도 소래역사관 유물확충 사업 공고

소래역사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유물 확충 계획이 있음을 알립니다.

2013년 3월 8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식정보센터장

1. 구입 대상 유물

1) 소래지역(갯벌, 포구, 염전) 관련 자료

- ① 각종 어구 및 수산업 관련 자료
- ② 염업도구 등 관련 자료
- ③ 소래갯벌, 포구, 염전의 사진 등 자료
- ④ 기타 소래지역과 관련 있는 자료 등

2) 수인선 관련 자료

- ① 열차 승차권 및 열차 시간표 등의 자료
- ② 수인선 관련 기념품 및 관광엽서, 팸플릿, 사진 자료
- ③ 기타 수인선과 관련 있는 자료 등

2. 참가자격

- 소장유물의 매매를 희망하는 개인(종중 포함), 문화재매매업자 및 법인 단체

※ 도굴품, 장물, 위조품 등의 불법유물은 신청불가

3. 신청방법

1)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 매매 희망 시 유물·자료 매도신청서와 매도대상 유물·자료 명세서를 작성한 후, 유물의 모습과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3"×5" 규격의 칼라사진 1매를 매도대상 유물·자료 명세서에 첨부하여 소래역사관 학예실로 2013년 4월 30일 까지 우편 송부 및 직접 접수(우편접수는 2013년 4월 30일 도착분에 한함)

2) 이메일 접수

- 이메일 접수 시 우편접수와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한 유물·자료 매도신청서와 매도대상 유물·자료 명세서와 함께 매도희망유물 이미지의 디지털 파일을 별도로 압축하여 choonsiks@korea.kr 로 접수

3)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유물에 한하여 실물 접수

- 평가대상 선정 여부는 학예실을 통하여 개별연락을 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신청기간

- 2013년 4월 16일(화) ~ 4월 30일(화)
월요일은 역사관 휴관일이므로 방문접수가 불가합니다.

5. 신청장소

- 소래역사관 학예실 (담당자 : 김춘식 학예연구사)

6. 신청 시 필요서류

- ① 유물·자료 매도신청서(역사관 소정양식 다운로드)
- ② 매도대상 유물·자료 명세서
(역사관 소정양식 다운로드, 사진 1매 부착)
- ③ 매도신청자 신분증 사본
- ④ 문화재매매업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문화재매매업 종사자만 해당)

7. 기타사항

- 매매 희망 유물은 문화재보호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구입여부는 본 역사관의 소장품 구입 절차에 따라 심의 후 최종 결정되며,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소장자에게 통보하여 반환함.(심의 결과에 관한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유물매매약정 체결 후, 대금지급과 동시에 유물에 대한 소유권은 역사관으로 이전.
- 최종구입대상유물로 결정된 유물자료가 도굴, 장물 등으로 밝혀지거나 문화재보호법에 저촉되는 사항의 발견 시 법적책임은 매도신청자에게 있음.

매도대상 유물·자료 명세서

[접수번호:]

명 칭		수 량	
크 기		시 대	
소 장 자		요 구 액	
소장경위	- 소장경위를 육하원칙에 의거해 구체적으로 기술		
내 용	- 주요 특징 및 수리 및 파손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술		
사 진			

유물 · 자료 매도 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번호	명 칭	수량	시 대	재 질	출 처	크 기	희망가격
1							
2							
3							
4							
5							
6							
7							
8							
9							
10							
계							

1. 위와 같이 유물 · 자료 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자료는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위법하거나 장물로 판명될 경우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 · 자료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 · 자료는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식정보센터장 귀하

공 고

지식정보센터 공고 제2013-2호

소래역사관 유물기증 안내

“소래역사관에서는 소중한 유물자료의 기증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3년 3월 8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식정보센터장

소래역사관에서는 소래 지역의 옛 모습을 느끼고, 추억해볼 수 있는 근현대 유물자료를 기증받고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참여형 역사관을 목표로, 기증 받은 유물 자료는 소래역사관의 전시와 교육프로그램 등에 유용하게 활용되거나, 우리 역사관 소장유물로 등록되어 영구 보존될 것입니다. 이에 지역 원로들과 유물자료 소장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바랍니다.

- 소래갯벌/소래포구 - 각종 어구 등의 갯벌 및 포구 관련 자료
- 수인선 - 승차권, 열차시간표 등의 수인선 관련 자료
- 소래염전 - 염업도구 등의 소래염전 관련 자료

◎ 유물기증자 예우 - 기증증서 증정 및 주요행사 초청.

※ 유물자료의 기증을 원하시는 분은 담당 학예사에게 연락바랍니다.(032)453-5632